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용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이용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영철, 김재진, 김지향,
민병주, 박승진, 박춘선,
봉양순, 서상열, 서준오,
송도호, 송재혁, 왕정순,
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
정준호, 한 신, 홍국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,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,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,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집·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,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,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함(안 제2조제3호).
- 나.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(안 제3조제2항).
- 다.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라.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함(안 제4조제4,5호).

마.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,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 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촉진에 이바지함”을 “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,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”(이하 “수집·관리인”이라 한다)이란 재활용품을 수집·운반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
2.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
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4.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시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4.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

5.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있으며,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·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활용품 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 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 로써 자원재활용의 <u>촉진에 이바 지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촉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, 나아가 재활 용품 수집 · 관리인의 복지 증진 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</u> 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 략) 3. “재활용품 수집 · 관리인”(이하 “수집 · 관리인”이라 한다)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. 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재활용품 수집 · 관리인”(이하 “수집 · 관리인”이라 한다)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 · 운반 하거나,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</u> 1. <u>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</u> 2. <u>수집 · 관리인에 대한 실태조 사 및 조사 결과 반영</u> 3. <u>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</u> 4. <u>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</u>

②·③ (생략)

제3조의2(실태조사)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4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8조(자료요청) 시장은 제7조에

대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

5.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6. -----

-- 구청장---

제8조(자료요청) ① -----

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
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
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
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<신 설>

----- 있다.

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
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
라야 한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① 시장은
수집·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
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
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
와 협력하여 수집·관리인의 근
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
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 및 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등 조례의 용어 및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